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

2019. 3.

지식재산 전략 협의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3
III. 현황 진단	6
IV. 비전 및 전략	16
V. 혁신 과제	17
VI. Action Plan	52

I.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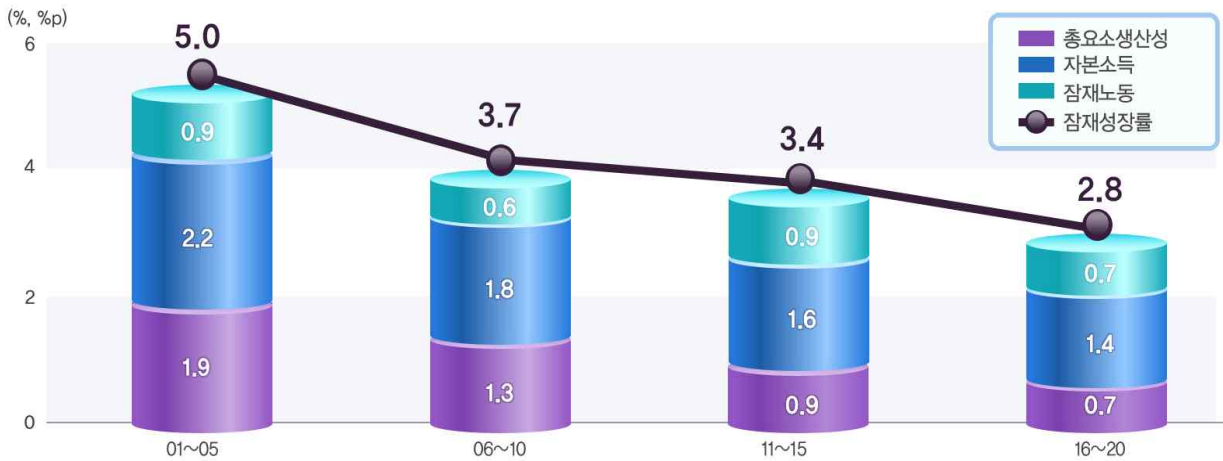
◇ 서서히 약화되어 가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 간, 한국경제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
 -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중국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 등 세계경제 여건도 점차 악화
 -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소득격차의 확대, 낮은 일자리 창출력, 기업의 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
 - 그 결과,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평균 성장률이 2.0%p 하락*하였고 최근에도 하락 추세는 지속**
- *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성장률(%): ('01-'07년 평균) 4.9% → ('12-'18년 평균) 2.9%
- ** 최근의 경제성장률(%) : ('17) 3.1 → ('18) 2.7 → ('19) 2.6 (IMF 전망치)

◇ 성장 동력 약화의 주된 원인은 혁신역량의 저하

- 한국경제 성장세 둔화는 내수부진 등 수요요인도 있으나 노동, 자본, 생산성 부진에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보다 근본적 원인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00년대 전반 5.0% 수준에서 '10년대 후반 2.8%까지 하락한 상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총요소생산성*** 하락으로 우리경제의 **혁신역량이 저하되었음**을 강력히 시사
- * 노동, 자본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상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생산효율성 지표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공급 감소에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가 절실

<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18, 한국은행) >



◇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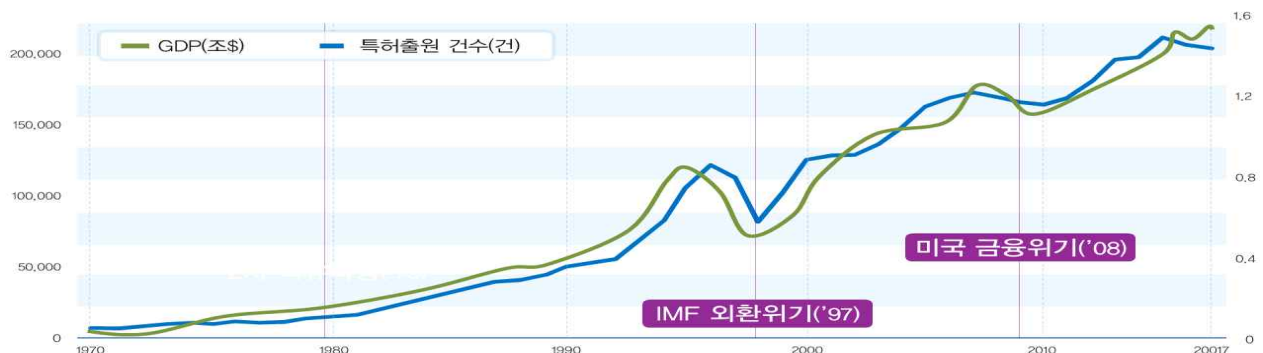
- 지식재산은 산업 경쟁력 확보·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요인
 - 최근 미국은 지식재산 보호를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 이슈로 제기하며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일본, 중국 등은 지식재산 기반의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추진
 - * (일본)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표준화 전략 등 미래투자전략 추진('17~)
 - (중국) 4차 산업혁명 핵심특허 축적을 주 목표로 설정하여 제조 2025 전략 추진('15~)
 - 지식재산은 혁신적 기술·아이디어의 산업적 활용을 확산시켜 산업 경쟁 우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촉진
 - * 내생적 성장이론(폴 로머, '18년 노벨경제학상) : 노동력·자본의 투입 외에 내부적 요인인 기술·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될수록 한계생산성이 개선되어 지속성장 가능
- 두뇌가 자원인 우리나라는 지식·기술,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선점하는 것이 필수적인 생존 전략
 -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결집·강화하여 미래성장과 산업혁신의 자양분으로 활용하는 국가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II.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 지식재산은 경제성장의 메인 팩터(Main Factor)

- 특허가 경제성장을 유인한다는 다수의 실증적 연구 결과 존재
 - G7 국가에서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에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허 성장이 경제성장을 유인(MPRA Paper, 2011)
 - 특허 성장률이 1%p 증가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이 0.65% 증가
 - * G7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분기별 통계(1963Q1~1993Q4)를 활용하여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의 동태적 연관관계 확인
 - 특허 활동과 R&D 투자가 GDP 성장에 긍정적이며, 특허 활동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Research Policy, 2010)
 - 고품질 특허를 보유할수록 GDP 성장률이 더 높다는 사실도 입증
 - * 58개 국가의 1980년~2003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허의 양·질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R&D, 특허가 1인당 실질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GDP도 뚜렷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임
 - 우리경제는 R&D를 통한 특허 확보에 매진하여 세계 10위권 달성·유지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와 경제성장>



-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 집약산업 : 종사자 1인당 지적권 수가 평균 이상인 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크고, 고용비중도 높은 상황
 - *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 (미국, '16년 미 상무부 발표) '10년 34.8%, 18.5% → '14년 38.2%, 18.2%
 - (EU, '16년 EU 지식재산청 발표) '08~'10년 38.6%, 26.0% → '11~'13년 42.0%, 27.8%

◇ 지식재산은 산업혁신의 트리거(Trigger)

- 특허 제도가 발전되어 혁신을 보호함으로써, 1차~3차 산업혁명 견인
 - (영국) 근대적 특허제도 세계 최초 도입 →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 획득 → 기술혁신 붐 및 1차 산업혁명 촉발
 - (미국) 링컨·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親특허정책(Pro-Patent)을 통해 전기에너지·컴퓨터 핵심 기술을 선점하여 2·3차 산업혁명 주도
- * 미국의 특허 보호 확대 : 컴퓨터 관련 발명('81), 반도체배치설계('84), 소프트웨어('94), BM('98)

	1차 산업혁명 (1784)	2차 산업혁명 (1870)	3차 산업혁명 (1969)	4차 산업혁명 (21세기)
특징	기계화 혁명	대량생산 혁명	지식정보 혁명	만물초지능 혁명
핵심기술	증기기관	전기에너지	컴퓨터·전자	AI, 빅데이터, IoT
주도국	영국	미국	미국	
특허 정책	1624년 영 특허제도 세계 최초 도입 → 기술개발촉진 1769년 영 와트 : 증기기관 특허 획득	1790년 美 세계 두 번째 특허제도 도입 1836년 美 세계 최초 특허 심사체계 구축 1865~1930 美 링컨 1차 Pro-patent 정책	1985년 美 영-리포트 (신기술·특허 보호 강화) 1981년 美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 인정 판결 1980년대 美 레이건 2차 Pro-patent 정책	주도 국가는?
등록특허 추이	전분야 3.2배 증가 (1770~1800)	전분야 5.8배 증가 (1860~1890)	컴퓨터 분야 3.4배 증가 (1965~1995)	SI 등 핵심분야 12.1배 증가 (2010~2015)

- 4차 산업혁명기는 특허가 혁신의 촉매제 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 미래성장과 산업혁신을 이끄는 단계로 국면 전환
 - 특허 빅데이터* 분석(全 세계 4억여건)을 통해 기술 융·복합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기술 선점 방향 제시 가능
- * 미래 산업 및 시장, 기술 트렌드, 경제 주체 활동(산학연) 등 미래 정보가 모두 포함

◇ 지식재산은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성장의 필수 조건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 시대와는 달리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이 혁신을 주도
 -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융·복합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며 누구나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
 - 넷플릭스(동영상 스트리밍),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등은 ICT 기술 기반의 新 사업 모델을 창출하여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

-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사업화 성공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를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기술 보호가 필수
 -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모방자 출현, 분쟁 발생 등으로 사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
 - 지식재산 보유 스타트업의 매출·고용 증가가 탁월한 것으로 조사

<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

- ◇ 스타트업의 최초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는 거절된 경우에 비해 **5년 후 고용 증가율 4.1배**(등록 71.9%, 거절 17.4%) 및 **매출증가율 2.9배**(등록 120.4%, 거절 40.9%) **높음**(전미경제연구소, '17)
- ◇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 보유 시 미보유 대비 35배** 증가하고, 창업 후 1년내 상표권 등록 시 미등록 대비 5배 증가(MIT Innovation Initiative, '16)
- ◇ 일본 특허청은 특허출원 혹은 심사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VC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확률이 높아짐**을 실증적으로 입증('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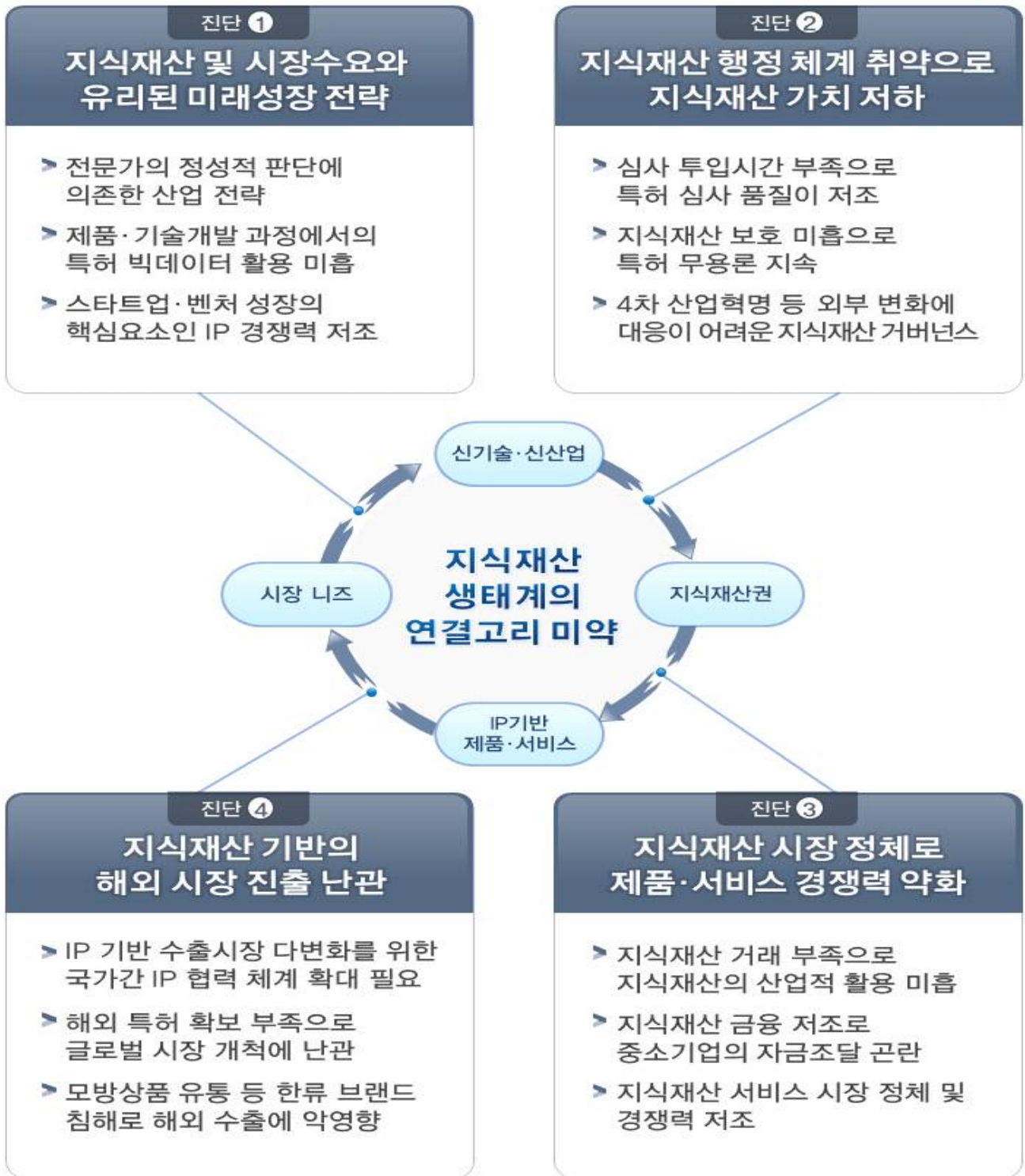
* 일본특허청, 「2016년 지적재산제도가 경제에 미친 역할에 관한 조사보고서」

◇ **지식재산은 혁신적 포용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중요**

-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 일본의 온리 원* 기업과 같이 탄탄한 기술력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강소기업 육성이 중요
 - * 다른 회사에는 없는 유일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일본의 강소기업을 지칭
-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심의 기존 경제 시스템을 극복하고,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역량 및 보호 강화가 요구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라도 기술·아이디어 탈취 및 지재권 침해 등으로 신사업 진출에 난항
 - 핵심 기술을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강하게 보호하는 법·제도가 구축되어야만, 중소기업의 독점적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
-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신사업에 진출·성공하도록 하는 혁신적 포용성장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

III. 현황 진단

◇ 지식재산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미약하여 산업·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지식재산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



- ◇ 미래 성장동력 발굴·신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 부족
- ◇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저조로 신산업 창출에 한계

□ 특허 빅데이터는 미래 산업·기술 예측의 나침반이나, 활용은 미미

○ 특허 빅데이터(全 세계 4억 여건) 분석은 미래 산업을 예측하여 국가 및 기업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틀

- 특허 빅데이터는 산·학·연이 자금을 투자하여 생성한 정보로 산업·시장, 기술 트렌드, 경제주체 활동 등의 핵심 정보가 포함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등 新 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장·기술 방향을 제시*

* WIPO·USPTO·EPO·UKIPO는 수석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를 설치·운영하여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시장 전망 제시

< 일본 특허청의 특허출원기술 동향 조사 >

- ◇ 일본은 '00년부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술의 특허논문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별 경쟁력 진단, 시장전망 및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
- '18년 조사 : 유기EL(OLED)·리튬2차전지·자율주행시스템 등 12개 기술

○ 우리나라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분석보다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정성적 방식으로 산업 전략을 수립

- 정성적 방식은 제한된 전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미래 산업 및 유망 기술에 대한 편향된 예측이 발생할 우려
- 참여 전문가의 연구분야 및 기업의 단기 수요위주로 발굴되어 중장기 관점에서 산업을 선도할 혁신 분야가 배제될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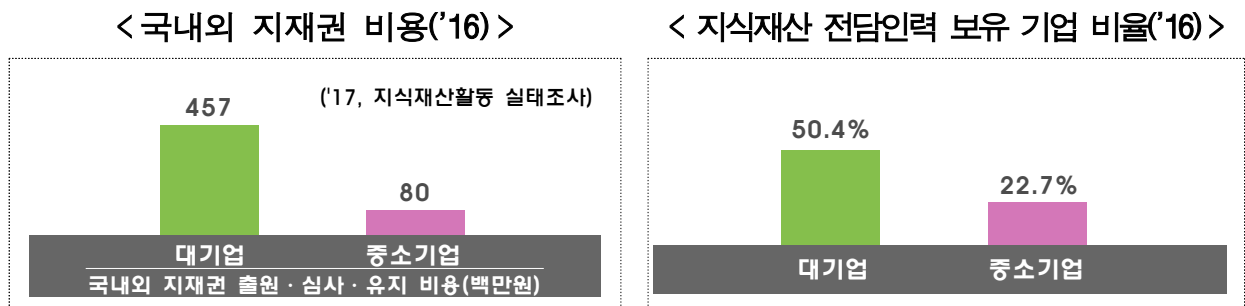
*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 동향 등을 R&D 부처에 제공하고 있으나, 심층 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의 활용도 저조한 실정

□ 제품·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저조

- 정부 및 민간 R&D 과정에서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부족하여 원천·핵심 특허 확보에 한계가 있고, R&D 투자 효율성도 저하
 - R&D 투자 중소기업(4만여개) 중 특허 연계 기술개발 사업*(IP-R&D)을 지원받은 중소기업(1,700여개)은 4.1%에 불과
 -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한 특허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최적의 기술개발 전략
- 정부 R&D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수특허 비율*이 저조하고 4차 산업혁명 표준특허**도 매우 부족한 실정
 - * 미국특허 中 우수특허(% '12~'16) : (한) 정부R&D 6.1, 전체 11.1 / (미) 연방R&D 18.6, 전체 21.9
 - ** 4차 산업혁명 5대 분야 표준특허('17, 건) : (한) 95, (미) 1,508, (일) 336, (독) 285

□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미흡으로 혁신 창출에 한계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투자 지출(변리사 비용 등)이 매우 적고, 지식재산 전담 인력 보유 비율도 낮은 상황



- * 조사대상 : 지재권 2건 이상 출원, 1건 이상 등록한 기업 2만 9천여개 기업
- 지재권 경쟁력 미흡 등으로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낮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공 사례도 미미한 실정**
 - * 창업 기업 5년 생존율('15, 무역협회) : 프랑스 44.3%, 영국 41.1%, 독일 39.1%, 한국 27.3%
 - ** 311개 글로벌 유니콘(10억불 기업가치 스타트업) 중 한국은 6개('19.1, CB 인사이츠)
- 인공지능 등 지식재산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스타트업도 부재
 - * 2019 AI 분야의 기업가치 평가 기준 100대 스타트업('19.1, CB 인사이츠) : 미국 77개, 중국·영국·이스라엘 각 6개, 인도·일본 각 1개, 한국 0개

- ◇ 심사 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 심사 품질이 미흡하며, 제도적인 권리 보호 수준도 낮아 지식재산의 사업적 활용 가치가 미약
-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보호 수요 증가 등 외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식재산 거버넌스

□ 심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심사 품질 미흡

- (현 황) 선진국 수준의 특허 심사처리기간인 10개월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허 심사 품질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 심사처리기간('17, 개월) : (韓) 10.4, (日) 9.3, (美) 16.3, (EPO) 8.0, (中) 14.4
 - ** 특허심사품질 순위 : 유럽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18, 영국 IAM 매거진)
- (원 인) 심사 물량에 비해 심사인력 증원 및 선행기술조사 역량이 충분치 않고, 업무 효율성도 낮아 1건당 심사투입시간이 부족
 - * 1건당 투입시간('17, 시간) : (한) 11.9, (일) 17.5, (미) 25.3, (중) 26.3, (유럽) 35.1

□ 지식재산 보호 미흡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성장 저해

-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3배 징벌배상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 현실화 기반은 마련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 필요
 - * 손해배상액 중앙값 : (한) 6천만원, (미) 65.7억원 → 1/110 (GDP 고려시 1/9 수준)
-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피해로 성장사다리 약화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 〉

- ◇ 대기업 A社は 중소기업 B社로부터 도장부스 약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제공받은 후, 이를 B社の 동의 없이 C 대학교에 전달하여 신규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고 이를 C 대학교와 공동특허로 등록·사용
- ◇ 중견기업 D社は 중소기업 E社로부터 F대교 공사를 위한 교량설계 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지급 없이 F대교 설계에 사용

- **사업적 활용 가치는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에 이르지 못하는 기술·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소 발명 보호 공백 발생**
 - 실용신안제도는 소발명 보호를 위한 것이나, 무심사주의 폐지('06) 후 특허제도와의 특별한 차별성을 갖지 못해 출원이 급감
 - * 실용신안출원 : ('07)21,084건 → ('17)6,811건(68%감소)
 - 특허출원 : ('07)172,469건 → ('17)204,775건(18.7%증가)
-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유발하는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정비 필요**
 - * AI에 의한 발명 보호, 빅데이터 보호, 증강·가상 현실에서의 지재권 보호 등

□ 외부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는 지식재산 거버넌스

- (지식재산 행정)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심사 수요 확대*, 지식재산 침해 조사·수사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력 부족
 - * 일본은 IoT 담당 심사관과 기타 이종기술 심사관이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IoT 전담 심사조직 신설('17.4)
 -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8)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지재권 침해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관련 조직 및 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현재 수사 인력만으로는 역부족
- (지식재산 거버넌스) 지식재산 행정·사법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리급 위원회이나, 사무 조직이 개별 부처에 설치되어 여러 부처에 산재된 IP 정책 총괄·조정 역할이 미흡**
 -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는 수도권 대비 매우 열악***하고, 중앙정부·지자체·지역기업·지역대학의 유기적 지식재산 협력체계 미비
 - * IP 인프라 비율(수도권/지방) : IP 서비스 기관(89/11), 특허사무소(71/29), IP 금융기관(83/17)
 - **지식재산 침해 소송 중 민사 본안 소송에 대한 관할만 특허법원으로 집중('16.1~)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재산 소송 서비스에 한계**
 - * IP 침해 가처분 사건,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형사 소송 건은 지법·고법 관할

- ◇ 지식재산을 사고 파는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식재산 활용이 저조하며, 이는 산업 및 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
- ◇ 기술·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 금융 시장 미활성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신사업 진출·확장에 난관
- ◇ 지식재산서비스(특허 사무소, IP 정보 분석 업체 등) 시장이 정체되어 기업의 고품질 지식재산 확보 및 활용이 여의치 않은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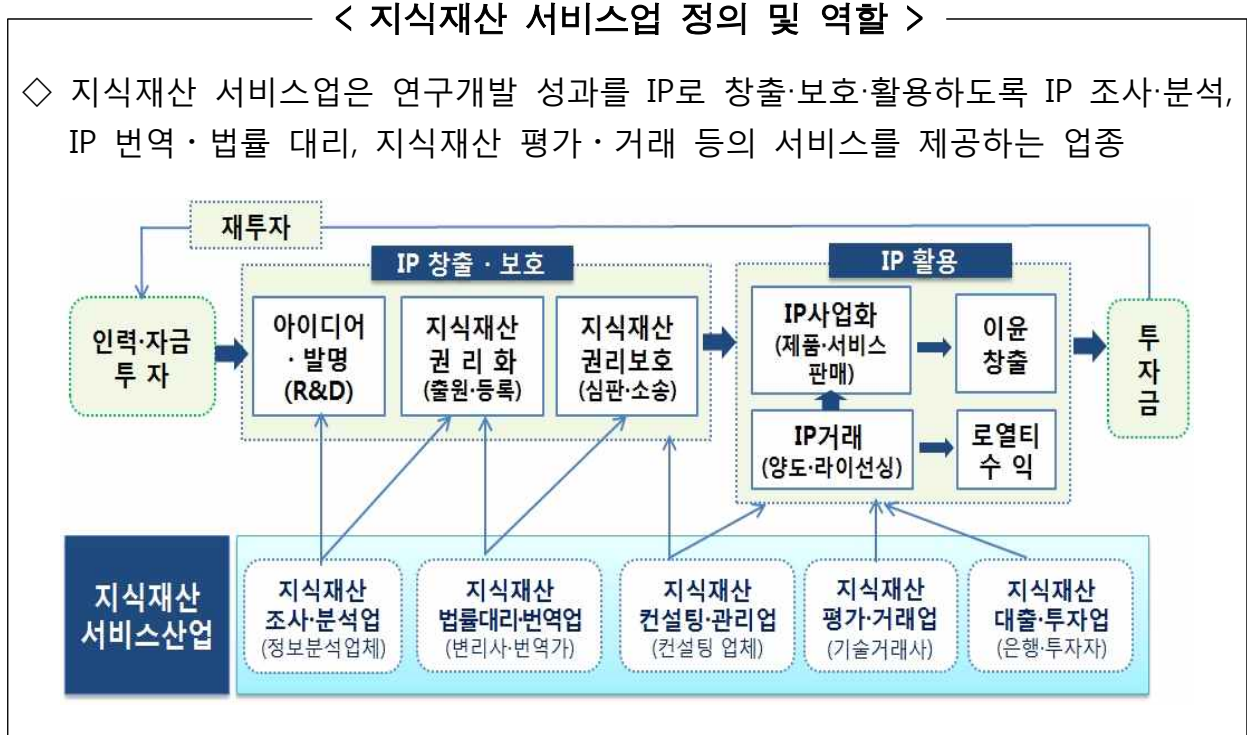
□ 지식재산 거래 미흡으로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 저조

- (기업)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거래가 부족한 상황 ⇒ 지식재산의 산업 혁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
 - (매입)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구매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
 - * 기업의 특허 등 외부지식 구매 비율 : (한국) 4.9%(’13~’15년), (일본) 29%(’12~’14년) (2016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 2016 일본 전국 혁신 조사)
 - (매도) 수요·공급처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보유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한 기업 비율도 5%에 불과(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 결과, ’17)
 - * 지식재산의 매각·이전 시 가장 큰 애로사항 : 수요·공급처 발굴의 어려움 (28.8%), 기술료 산정의 어려움(16.0%) 등
- (대학·공공연)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의 거래·활용·품질 미흡
 - 대학·공공연은 정부 R&D 예산의 68.9% 및 특허성과의 73.4%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효율성*과 특허 활용률**은 극히 저조
 - * 기술이전 효율성(기술이전수입/연구비, ’16) : 한국 1.41%, 미국 4.43%
 - ** 국내 특허활용률(’17) : 대학·공공연 34.9%, 기업평균 75.5%
 - R&D 실적 제출을 위한 양 위주의 특허출원 관행이 만연하고, 우수발명 중심의 질적 특허관리 역량이 부족
 - * 기술이전수입/계약건수(’16) : 한국 22백만원/건, 미국 445백만원/건

□ 지식재산 금융 저조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곤란

- (IP 가치 평가) 객관적 평가 기준 미흡, 평가 전문성 부족 및 비용 부담(500백~1,500백만원) 등은 지식재산 가치 평가 확산의 걸림돌
 - * 특허를 보유한 5만 6천개 중소기업 중 가치평가 지원기업은 약 1,857개로 전체 대비 3.3%에 불과('10~'17)
 - 민간 기관의 가치평가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가치평가 수요가 공공 평가기관에 편중**되어 민간 평가 시장 성장에 한계
 - * 가치평가기관(민간) : ('14) 10(0) → ('15) 12(2) → ('16) 13(3) → ('17) 15(5) → ('18) 18(7)
 - ** '17년 지식재산 가치평가 건수(514건) 중 민간섹터의 평가 비율은 5.6%에 불과
- (IP 담보 대출) 부동산 등 안정적인 담보 대출 관행, 지식재산 거래 시장 미성숙 등으로 금융권은 지식재산 담보 대출 취급을 기피
 -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은 주로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위주(95.7%, '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중소기업중앙회)
 - * 일부 국책은행에서만 IP담보대출 시행('17년 산업은행 841억원, 기업은행 25억원)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기업의 IP 가치를 인정받아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 조성 시급
- (IP 투자)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펀드가 조성되어 투자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가치에 기반한 투자는 미흡
 - * IP가치평가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태조합 특허계정 펀드의 신규출자는 저조
- (IP 금융 관련 규제) 지식재산 금융 대상이 국내 등록 특허에만 한정되는 등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존재
 - * IP 금융 대상이 국내 등록 특허로 한정되어 있어서, 혁신형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의 출원 중인 특허나 해외등록 특허에 대한 융·투자 곤란
- (IP 금융 네트워크 미흡) 수요·공급 기관간 소통·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로 체계적인 IP 금융 추진 및 인식 제고에 한계

□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업체 경쟁력도 부족



○ (시장 규모)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7조원*(’17년)으로 주요국 대비 작고**, 전체 서비스업 시장(1,900조원, ’16)의 0.09%에 불과

* 법률대리(출원·등록·분쟁 대리) 시장(0.7조원)이 전체 시장(1.7조원)의 41%를 차지

** 우리나라 시장(1.7조원)은 미국(16.7조)의 1/10, 일본(4.1조원)의 1/3 수준

○ (인력 규모)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의 전문인력*은 업체당 평균 16.4명으로 전체 규모는 14,000여명

* 지식재산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지식재산 활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일반행정·사무인력은 제외

○ (업체 경쟁력)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약 70%에 이르는 등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가 영세하며, 신규 창업 및 투자도 저조

* 매출규모별 분포: 1억원 미만 9.4%, 1~5억원 39.1%, 5~10억원 17%

○ (해외 진출) 해외 매출이 거의 없는 업체가 대다수로 성장에 한계

* 해외발생 매출이 없는 기업(58.4%), 전체매출의 10% 미만인 기업(32.6%)이 대다수

◇ **원활한 해외 지재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현지 지재권 출원 부족**

□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통상 전략 부재**

○ **신흥국·저개발국에 한국형 IP 시스템(제도, IT 등)을 정착시키면 우리기업의 IP 확보·보호에 효과적이거나, 이를 위한 확산전략은 부재**

- 신흥국·저개발국은 낮은 심사역량* 및 시스템 미비로 현지에서의 신속한 권리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

* 신흥국 심사착수기간(년, '17): (브라질) 7.4, (인도) 4.3, (베트남) 3.5

-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신흥국·저개발국에 확산하고, 심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IP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사례) UAE에 특허심사 대행('14~), 특허정보시스템 구축('10~) 등 협력 추진

〈 주요국 사례 〉

◇ (일본) 일본에 등록된 특허는 신청만으로도 현지 특허권이 부여되는 CPG(Cooperation for facilitating Patent Grant) 협약을 캄보디아('16.7.), 라오스('16.11.)와 체결

◇ (미국) 위조상품 단속, 부정경쟁 방지, 영업비밀보호 등 IP보호 관련 세미나 개최 지원

◇ (EPO) 특허정보 시스템 등 ASEAN 특허행정 선진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 **IP5¹⁾ 지식재산권 규범 논의*, WIPO²⁾ 협력 등 글로벌 IP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식재산 질서 형성 필요**

- IP5 간 교차출원 비중*은 크지만 국가 간 심사결과 일치율**이 낮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 결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17년 집계) '13년 IP5에 최초 출원된 특허 중 35.2%가 다른 IP5로 교차출원(53만건)

** '15~'17년 심사된 한·미 간 교차출원 3건 중 1건이 심사결과 불일치

1)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세계 5대 특허청이 '특허분야 업무 공조'를 위해 2007년 출범시킨 협력체로 전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처리

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1967년 유엔 특별기구로 설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 Madrid(상표), Hague(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 관할

□ 해외 지재권 확보 미흡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난관

-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특허 확보가 절실하나, 주요국 대비 해외 특허 출원은 부족한 실정

< 국가별 해외특허 출원현황('17) >

국가	국내출원 (내국인)	해외출원	수출액 (억불)	수출1억\$당 해외출원 건수	국내출원 1건당 해외출원 건수
한국	159,084	67,245	5,737	11.7	0.42
미국	293,904	219,501	15,463	14.2	0.75
일본	260,290	199,006	6,981	28.5	0.77

- 반면, 중국의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

* (중국 해외출원) ('13) 28,365 → ('17) 59,220, (PCT출원) ('13) 21,508 → ('17) 48,904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등의 해외 특허 출원은 극히 저조한 상황

- 내국인 국내 출원의 11.7%만이 해외에 출원되며, 특히 중소기업, 대학, 정부, 지자체의 경우는 5% 미만으로 해외 출원이 극히 저조

* 대기업 36.8% vs. 중소기업 4.3%, 대학 4.5%, 정부 1.6%, 지자체 1.0%

- 우리나라의 미국 대상 특허출원은 양호하나 주요 수출국(중국, 베트남 등) 및 신흥국(인도 등) 대상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

* (미국 수출 1억불당 미국출원건수) 한국 48.4, 독일 25.7, 일본 61.6
 (중국 수출 1억불당 중국출원건수) 한국 7.4, 독일 14.8, 일본 24.7
 (인도 수출 1억불당 인도출원건수) 한국 10.4, 독일 21.3, 일본 43.2

□ 모방상품 유통 등 한류 브랜드 침해로 해외 수출에 악영향

- 한국 브랜드를 내세워 가짜 한국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기업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중동 등 쏠 세계로 매장을 계속해서 확장 中

* 2000년대 초반에는 Anycall(애니콜) 등 전자 제품에 대한 짝퉁(애미콜)이 제조·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화장품, 식품 등으로까지 확산

*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MUMUSO, iLahui 등 10개 업체가 1,194개의 매장 운영 중('18.10)

- 이로 인해 현지 소비자의 한국상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훼손되어 한국브랜드 실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

* 해외진출기업 101개사를 대상(응답기준)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평균 피해규모는 480백만원('18.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V. 비전 및 전략

역동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V. 혁신 과제

전략 1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기본 방향

-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제시
- ◆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적용 확산을 통해 강한 특허 확보 지원
- ◆ 스타트업·벤처 성장을 위한 IP 창출-보호-활용 지원 플랫폼 구축

정책 목표

구분	As-is	To-be(~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 전략 수립	1개 분야 (디스플레이)	38개 분야 (‘19~’23, 누적)
R&D 수행 중소기업 中 특허분석 활용 기업	4.1%	8.2%
표준특허 수	1,767개	2,800개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투자 확대	0.5조원 (‘14~’18, 누적)	1.1조원 (‘19~’23, 누적)
R&D 수행 중소기업의 특허 보유율	52%	60%

혁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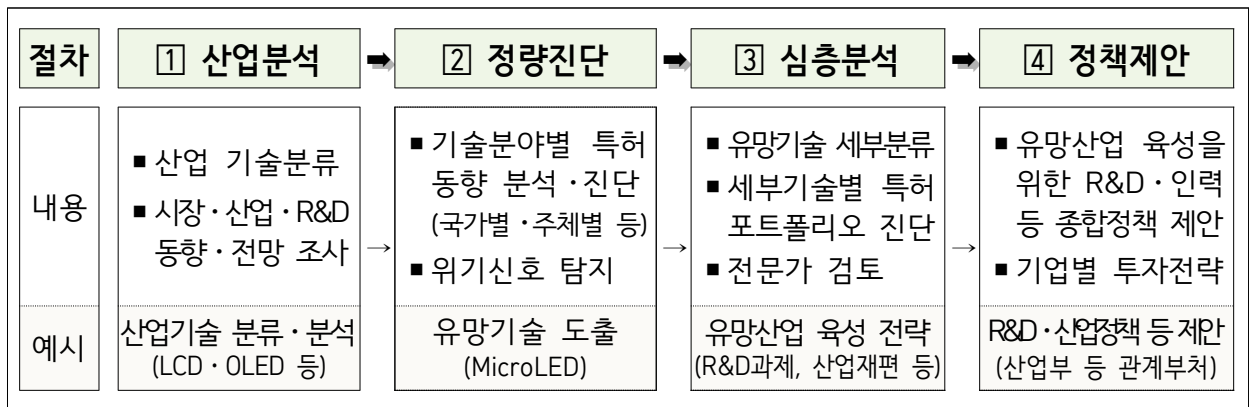
- ① 특허 기반 산업 혁신 및 미래 발전 방향 제시
- ② 특허 연계 제품혁신·기술개발 전략 확산
- ③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벤처 성장 촉진

1 특허 기반 산업혁신 및 미래 발전방향 제시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 방향 및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여 미래 신산업신기술 육성

□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 특허청의 기술·특허 전문성 및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분야별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유관부처, 기업, 연구소 등에 제공
 - (분석 대상) 주력산업·신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중 주요 정책현안, 국내외 산업·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 선정
 - * 분석대상 산업분야(누적) : ('19)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 → ('23) 38개 분야
 - (전략 수립) 산업분석과 특허 빅데이터 정량진단을 통해 유망 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심층분석하여 유망산업 육성 전략 수립



*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과기장관 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 추진('19)

- (추진체계) 특허청과 특허전략개발원을 중심으로 산업분석TF팀*을 구성하고,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 그룹을 통해 의견수렴

* 특허·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심사 경력자, 산업·특허 분석의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한 특허전략개발원 프로젝트 관리자(PM)로 TF팀 구성

▷ [참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 디스플레이 산업 분석 결과 ◁

① 산업분석 :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방향에 최적화된 MicroLED, 그러나 해외기업에 비해 뒤쳐진 국내기업

- 특허 빅데이터 키워드 추출* 등을 통해 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패널기술을 탐색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MicroLED가 산업 발전방향에 가장 부합**

* 26만개 특허분류코드 검색 및 최근 출원빈도 증가를 통해 신속히 부상기술 탐색

** 영상실감화(3D 등), 폼팩터 혁신(플렉시블화 등) 등 쏠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특성 보유

- 미국 애플('14년 MicroLED 스타트업 인수) 등 해외 주요기업은 MicroLED로 주도권 변화를 모색 중이나, 우리나라는 OLED·퀀텀닷 위주로 기술개발

② 정량진단 : 노란불 켜진 OLED, 차세대 MicroLED로 위기 돌파해야

- 쏠 세계 특허 출원량 분석 결과, 안심할 수 없는 OLED와 퀀텀닷

* 중국이 연도별 출원량에서 OLED와 퀀텀닷을 각각 '17년 및 '16년에 추월하였고, 시장조사기관 IHS는 OLED의 경우 생산능력 기준으로 중국이 '22년경 추월 전망

[참고] 특허출원량이 사전 위기신호로 작용한 사례(LCD와 조선 산업)

✓ 디스플레이 LCD 산업 : 중국에 '11년 출원량 역전 → 7년 뒤 시장 점유율 추월

✓ 조선산업 : 중국에 '02년 출원량 역전 → 7년 뒤 시장 점유율 추월

- MicroLED는 시장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장단계* 유망기술로, 포스트 OLED 시대 대비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 필요

* MicroLED는 '15년 출원량이 OLED의 5.0%, 퀀텀닷의 40.1% 수준으로 극초기 성장단계 기술

③ 심층분석 및 정책제안 : MicroLED 산업 육성 전략 제안

- 특허맵* 구축을 통한 산업육성 이슈 및 R&D 전략과제** 발굴

* 특허정보로 구축된 특허맵은 적(경쟁국, 해외 플레이어), 전력(세부기술별 경쟁력), 전장(기술별 특허 선점 및 공백 영역)을 알려주는 승전을 위한 안내서

** OLED 중심의 기존 디스플레이 산업 R&D 과제와 달리, ①원천기술, ②차세대 패널기술, ③응용기술 3대 분야 10대 MicroLED R&D 전략과제를 마련

- MicroLED 후방산업(장비·부품·소재) 및 전방산업(스마트폰·자동차 등) 동반 육성, 대학 내 혁신창업 가속화, R&D 세액공제 우대 등 종합 정책 제안

□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활용·확산

- (제도 개선)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R&D 기획 및 예산 배분의 근거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R&D 법령에 규정화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R&D 예비타당성 조사 및 R&D 기획 시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20~)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R&D 예타 분석 요구 시 특허분석 의무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2조(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R&D 예타 분석 시 특허분석 결과 반영 의무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 발굴) 신설	√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시 특허분석 결과 반영 의무화

- (R&D 과제 반영) 산업부 등 R&D 수행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R&D 기획·선정 시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과제 반영

* KEIT·TIPA 등 부처별 R&D 전문기관과 R&D 기획 공동 시범사업 추진('19~)

- (정책 수립 지원)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보급, 세제 개선 및 규제 완화 등 각 부처의 유망산업 육성 정책 수립 지원('19~)

- (민간 활용 확산) 특허 빅데이터 DB 및 분석 결과를 투자전략 수립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토록 민간 기업과 IP 서비스 업체에 제공

* 핵심기술별 특허 공백영역 등 분석자료 및 핵심특허 보유 기업·기관 목록 등('19~)

- (분석 고도화)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하여 분석 대상 산업의 부상기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19~)

□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청사진(미래 비전 2030) 제시

-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별·기술별로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여 그려보는 미래 청사진 수립

*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 미래학 전문가, 산업·거시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 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운영('20~)

2 특허 연계 제품혁신·기술개발 전략 확산

◇ 제품·기술 개발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의 전방위 확산

□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 (정부R&D) R&D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대학·공공연 지원 강화
 - 산업부 등 R&D 부처와 협업으로 대상 중소·중견기업을 공동 선정 후 IP-R&D와 R&D를 함께 지원하는 공동사업 확대
 - * IP-R&D/R&D 공동 지원 과제(개) : ('18, 시범) 22 → ('19) 80 → ('23) 160
 - 대학·공공연에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IP-R&D 지원을 확대* 하고, 실험실 창업 기술에 대한 IP-R&D 신규 추진
 - * 기업 주문형 IP-R&D 과제(개) : ('19) 20 → ('23) 50
- (민간R&D) 다수 기업의 공통 애로기술에 대한 특허전략을 도출하는 기업群 공통핵심기술 IP-R&D 신규 추진(25개 과제, '19)

< 산단에 대한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 추진체계 >



- (지자체R&D) 지역특화 R&D 특허분석 지원 및 제도화 추진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 R&D 사업에 대한 기획 (특허동향조사)-선정(선행기술조사)-수행(IP-R&D) 쉼 주기 지원 추진
 -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에 대하여 IP 조사·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 조례 제정 유도('19~)

□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인프라 구축

- (전담팀 신설) 특허전략개발원에 산업특허분석팀을 설치하여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반 산업·기술 전략 수립 전담 체계 구축
- (전문인력 양성) IP-R&D 방법론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의 IP-R&D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교육대상	협력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
변리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신규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에 16시간 반영
	변리사회	• 의무연수 교육과정 연간 5회 운영(50시간)
예비 연구인력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 6개교 IP-R&D 과정운영(4, 8, 16주 프로그램)

- (제도화)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 R&D 과제에 IP-R&D를 의무화하고 대형 R&D 사업단에는 특허전담관(CPO)이 참여하도록 근거 마련
 - *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통합하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및 공동 관리규정 등 각 부처의 R&D관리 규정에 제도화 추진('19)
- (가이드라인) 산·학·연이 특허분석업체를 활용하여 IP-R&D 자체 수행 시 필수 절차, 품질 등을 점검토록 가이드라인 마련·보급('19)

□ 4차 산업혁명 분야 표준특허 창출 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시장 및 표준화 동향을 분석하여 표준 특허 확보가 유망한 기술을 발굴·제공하는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 *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누적) : ('18) IoT 등 2개 → ('23) 빅데이터 등 14개 분야
- 혁신성장동력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산업부의 R&D-표준 연계사업*에 대한 표준특허 전략지원 확대
 -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표준화사업, 산업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 ** R&D-특허-표준 삼각연계 과제(개) : ('19) 33 → ('23) 50

3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벤처 성장 촉진

◇ 유망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비용 감면·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확대

□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유니콘 육성

-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 유니콘(기업가치 10억불)으로의 성장 지원
 - AI,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겸비한 스타트업을 매년 10개 선정하여 풀 패키지*로 집중 지원('20~)

* IP 포트폴리오 구축, IP 가치평가, IP 분쟁 대응, 특허 기술 이전, 모태펀드 투자 등



- 스타트업 IP 지원센터(한국특허전략개발원 內)를 설치·운영하여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 종합 지원 허브 역할 수행

□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벤처기업 대상 투자 확대

- 모태펀드(특허계정)·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23년까지 총 1.1조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 신규 조성·투자

< '19 ~ '23년 펀드 조성계획(안) > (단위: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조성액	1,800	2,000	2,200	2,500	2,700
정부					
모태출자	500	600	700	800	900
민간					
모태외 출자	1,300	1,400	1,500	1,700	1,800

□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및 신청료 감면**

- 중소기업의 특허비용부담 완화,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구분	현행('18)	개선 추진(안)
창출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25%)
	특허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25%)
활용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중소·중견(50%), 대기업(10%)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중소·중견(25%)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중소·중견·대기업(25%)
보호	특허공제부금 세액공제	중소(10%)·중견(5%)

-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권 조기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20만원→6만원) 도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등에 따라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민간의 투자를 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우선심사 고시 제4조 자목 (3))

□ **지식재산 경영컨설턴트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IP 역량 강화**

- IP 전문가(특허청 심사관 등)를 지식재산 경영 컨설턴트로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제품혁신 및 지식재산 관리 지원('19~)

구분	주요 역할
제품혁신	• 특허·디자인 정보를 활용하여 해외 특허·디자인을 회피하면서, 기존의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R&D 방향 제시
지식재산 관리	• 강한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IP 포트폴리오 마련 • 특허 사업화, 심판·분쟁 대응 등 특허관리 시스템 구축

□ **스타트업 CEO 대상 지식재산 전략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CEO 등을 대상으로 IP 전략 교육 프로그램(가칭, KIPO-MBA) 제공

대 상	• 4차 산업분야 동종·유사 업종의 Start-up CEO 20~30명
내 용	• 해외 특허 확보 전략, IP 기반 자금 확보, 기업간 라이선스 전략, 특허 침해소송 대응 등 세미나 • CEO와 강사가 자발적인 학습형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컨설팅 지속

전략 2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기본 방향

- ◆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심사품질 혁신을 위한 인력 증원, 소통형 심사, AI 심사 도입 등 고효율·고품질 심사 체계 구축
- ◆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및 집행력을 대폭 강화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여 지식재산 가치 향상
- ◆ 4차 산업혁명 등 외부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미래시장 선점형 국가 지식재산 행정·사법 거버넌스 실현

정책 목표

구분	As-is	To-be(~2023년)
1건당 특허심사 투입 시간	11.9시간	20시간
IMD 보호수준	39위	20위
중소기업 기술유출 경험비율	3.8%	2.5%
징벌배상 제도 도입	특허, 영업비밀	특허, 영업비밀, 상표, 디자인

혁신 과제

- ④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 시스템 구축
- ⑤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및 인프라 강화
- ⑥ 미래시장 선점형 지식재산 거버넌스 실현

4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 시스템 구축

◇ 심사 투입 시간 적정화, 심사 방식 혁신 및 고도화 등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선도

□ 특허 심사 인력 증원 추진을 통한 심사 투입 시간 적정화

- (현 행) 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대로 세계적 수준이나, 주요국 대비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현저히 적어* 심사품질 다소 미흡**

* 1건당 심사투입시간('17, 시간) : (韓) 11.9, (美) 25.3, (日) 17.5, (유럽) 35.1, (中) 26.3

** 특허 심사품질에 대한 인식도 조사('18, 영국 IAM매거진) : 유럽 > 日 > 美 > 韓 > 中

- (개 선) 관계부처 협의 하에 특허심사관의 단계적 증원을 추진하여 1건당 심사시간을 적정화하고, 이공계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구 분	'19	'20	'21	'22	'23
특허 1건당 심사투입시간	12.7 시간	13.8 시간	14.5 시간	16.9 시간	20.0 시간

□ 특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처리계획 수립

	기 존	개 선
심사 품질 관리 방식	○ 심사처리기간-심사품질을 행정청 판단에 따라 관리	○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심사처리 계획 수립

- (현 행) 한정된 특허심사 인력·예산으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심사처리기간과 심사물량의 균형을 특허청이 결정

- (개 선) 출원인 대상 정기 설문조사,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해 외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심사처리기간 목표를 결정

-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을 위한 우선심사제도 정비* 추진('19~), 및 심사처리기간 편차를 고려한 심사인력 재배치
- 심사품질 포럼 등 외부 협의그룹과 함께 협의된 심사처리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 경주

* 수익자 부담금인 특허 수수료가 특허관련 분야에 중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

□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심사 품질 및 효율 제고

○ 대면 심사 활성화 등을 통한 출원인-심사관 소통 강화

- 출원발명의 취지, 핵심내용 등에 관한 기술설명회 개최를 통해 심사관의 신속한 기술 이해에 따른 심사 효율 극대화
- 산업별·기술별 IP 미팅을 정례화하여 최신 IP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산업 밀착형 심사기준 정립
- 출원인의 심사품질 관련 불만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고객 니즈에 기반한 품질 정책 추진

○ 토론형 공동심사 도입을 통한 심사품질 향상

- 심사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관 6~8인으로 구성된 심사팀이 개별건(상표·디자인)에 대한 토론형식 공동심사 추진('19)

— <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 공동심사제도 > —

◇ 상표('17.1~), 디자인('17.7~) 초기 중앙심사 : 유럽지식재산권청에서는 베테랑 심사관 30여명이 독립 공간에서 상표 및 디자인 출원건에 대해 공동심사를 실시하고, 실제 심사관에게 이관

- 상표의 경우 식별력, 디자인의 경우 도면요건 등에 대해 공동심사 실시

○ 특허 심사 서류 간결화를 통한 소통 및 심사 효율성 제고

- 통지서·의견서 등의 심사 서류를 출원인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간명화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심사관 소통 강화

* (현 행) 심사관은 통지서를 길게 쓰는 경향이 있고, 출원인도 많게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장황한 문서로 인해 소통 효율이 낮음

* (개 선) 출원인 구분, 대리인 유무 등에 따라 맞춤형 통지

- (예시) 대리인有 : 핵심쟁점만 간명하게 기재 / 대리인無 : 상세한 부가설명 포함

□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심사 고도화

○ (검색 시스템) AI를 활용한 기계번역, 문장 또는 이미지를 이용한 선행문헌 검색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23)

○ (심사 시스템) 심사·심판시 유용 정보 사전 제공*, 출원명세서 스마트 통합관리** 등 심사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정비(~'21)

* 키워드, 우선심사 적격여부, 청구항 오류, 선행기술 검색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

** 출원명세서 등에 형광펜 칠하기 등 에디터 기능을 제공하고, 각종 서류를 전자서류철로 함께 저장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사용

□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품질 제고

○ (현 행) 경쟁을 통한 특허 심사 지원 기능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육성 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17)

* 고품질 특허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예산사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 완전 경쟁체제에 따라 수행기관별 예산·인력 변동성이 커지는 등 사업 수행 안정성 저하로 등록제 도입 취지가 저해될 우려

* 조사기관 수: ('17) 3 → ('19) 10 , 조사원 수: ('17) 402명 → ('19) 490명(22% ↑)

○ (개 선) 조사 전문기관의 사업수행 안정성 확보 및 조사원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고품질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생태계 조성

- 사업 예산 증액, 기관별 수행 물량 변동폭 제한(예: -30~20%) 도입 등 안정적 사업 수행과 조사품질 경쟁이 조화되는 시스템 구축

*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 중장기 추진 계획(억원): ('19) 344 → ('23)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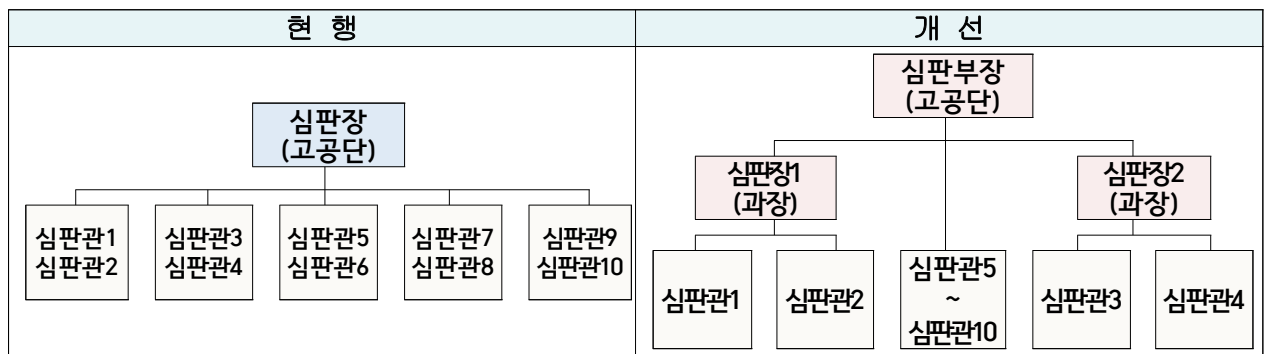
- 조사기관 기술 전문성 강화 및 선행기술 조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행기술조사 품질 혁신 체계 마련

* 세부 기술분야별 조사원 교육, 우수 조사원 인센티브 제공 등

□ **지재권 심사·심판 품질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 혁신**

-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장기 재직이 요구되는 심사·심판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추진('19~)
- (과장급 심판장 운영) 심판장(고위공무원단)의 심리·합의건수* 적정화를 위해 과장급 심판장 제도를 도입하여 심판합의 강화('19~)

* 심판장 처리건수('18): 851건/년(특허), 1,243건/년(상표) (특허법원 부장판사 177건/년)



- (5급 심판지원 인력 증원)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융·복합 기술분야 등의 심판지원 인력 증원* 검토('19~)

* 심판지원인력: (韓, '18) 10명, (美, '16) 104명, (日, '17) 36명

□ **산업별 특성 및 사업화 주기를 고려한 특허 수수료 정책 수립**

- (현 행) 현행 수수료 정책은 권리주체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확대 위주로 운영
- (개 선) 특허 수수료 체계 종합 개편 방안 수립('19~)
 - 산업별 특성,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 등을 고려하여 특허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유망·전략 산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감면하여 미래 성장 기술을 확보하는 등 수수료 정책을 유연화

* '19년 중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초안 마련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추진

5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및 인프라 강화

◇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제도·집행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 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개선 추진

□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가치 제고

○ 손해배상액 현실화

-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간주하는 제도를 특허법 등 지식재산법 전반에 도입('18.12 발의)
- 침해자 이익액 산정 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전환

○ 징벌 배상 및 증거 제출 강화 제도 확대

- 특허법에 既 도입된 징벌배상, 증거제출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지식재산법 전반으로 확대 추진('19 발의)

* 법원의 제출명령 대상 확대(서류→자료), 영업비밀도 제출의무 부과, 제출 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진실로 인정 등

- ▶ (징벌배상) 특허·영업비밀 → 상표·디자인 분야로 확대
- ▶ (증거제출 강화) 특허 → 상표·디자인·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

-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어형 컨설팅* 지원

* 타사 특허 침해 여부 검토 및 회피 설계 전략을 제공

○ 지식재산 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 신속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심판-조정 연계 등 지식재산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중재 제도 도입 추진

□ 아이디어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공정한 IP 질서 확립

-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시정권고('18.7 시행)의 집행력 담보를 위해 시정명령·불이행죄 도입(부경법 개정안 발의, '18.4)
 - 공공기관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추진
 - '아이디어 탈취 방지 가이드라인'(판단기준, 거래교섭 시 유의사항 등) 발간·배포를 통해 건전하고 정상적인 거래의 위축을 예방
 - 정부 R&D 규정 등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설명회 개최 및 홍보 추진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동반성장평가지수 등에 원본증명제도의 활용근거 마련

□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小발명 보호 제도 개선

- (현 행) 보호가치가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라도 기술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권리화(특허, 실용신안)가 어려운 상황
- * (사례) 설거지용 수세미 장갑이 실용신안으로 출원되었으나, 선행기술인 세안용 장갑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었고, 이후 유사제품이 난립
- (개 선) 신규성, 진보성 등 권리부여 요건과 권리행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용신안 제도 개선을 통해 아이디어 보호 추진

□ 특별사법경찰 확대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 특사경 조직·인력·인프라 확보를 통해 상표·디자인·특허·영업비밀을 포괄하는 완성형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출범('19.3)
- 검찰·경찰과의 협력, 신규채용 등을 통해 수사전문성 확보
- 기술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사경 직무 규정·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 및 인력 보강 추진

□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제도 개선

○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빅데이터 보호(중장기 과제)

- (현 행) 저작권법으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5년) 중이나, 비정형데이터 및 기계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편집물(예시 : 전화번호부)로 정의되어 있어, 이미지·사운드 등의 비정형 데이터 보호는 어려움
- (개 선) 해외 법제 검토 등을 통해 보호공백 영역에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보호 가능하도록 국내 보호법제 검토
 - *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에 한정제공 데이터(전자적 방법에 의해 상당량이 축적·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부정취득·사용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18.5)

○ 첨단 신기술로부터 파생된 상표·디자인 보호

- 이모티콘 등의 디지털 상품을 상표법상의 상품 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온라인상의 상표 사용 행위도 상표 사용 유형으로 추가
- 증강·가상현실(AR/VR)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는 디자인도 보호대상에 포함
 - * 적외선 빔 키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등

○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전송 방지 등 IP 침해 방지 규정 강화

- 3D 프린팅 데이터 전송 행위도 지식재산 침해에 포함하는 등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상의 IP 간접침해 규정 강화
 - * 3D 프린팅 데이터 전송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IP 침해는 현행법 상 제재 불가능

○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보호(중장기 과제)

- (현 행) 현행 특허법은 발명의 주체를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의한 발명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 발생 우려
- (개 선)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 인공지능 발명 보호법 제정 또는 특허법 개정('발명' 및 '발명자의 정의' 등 개정) 검토

- ◇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심사 증가, 기술탈취 조사건 확대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행정 체계 정비
- ◇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지식재산 소송 체계 고도화를 위한 지식재산 행정·사법 거버넌스 개편

□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등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 체계 개선

- 융복합기술심사 전담 부서 운영 및 특허심사 조직 정비 검토
 - (4차산업혁명 지원) 초융합 특성을 갖는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출원 심사를 위한 융복합기술 심사 전담 부서 운영 추진
 - *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별 현실에 부합하는 심사기준 (특허대상 범위, 진보성 수준 등) 정립·운영
 - (주력산업 지원) 주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특허 심사 조직을 기술분야별 조직으로 재편 추진
 - * 특허심사1/2/3국 → 전기통신기술심사국(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화학생명 기술심사국(화학, 바이오 등), 기계금속기술심사국(기계, 금속 등)
- 공정한 IP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경쟁조사 전담 부서 운영 검토
 - (현 행) 아이디어 탈취 조사 개시('18.7~) 및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업무 확대*에 따라 기존 1개과만으로 효과적인 업무 집행에 한계
 - * 특허청에 기존의 상표외에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이 추가로 부여되어 '19.3.19부터 시행
 - (개 선) 상표·특허·디자인·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업무,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운영 추진
 - * 행정조사를 통해 기업의 공장에 생산 중단을 권고하고, 수사를 통해 인신 구속 등 파급력이 강한 업무로 고도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확보 필요

□ 지식재산 행정·사법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IP 정책 동력 강화

- 중앙 거버넌스 : 강한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 (현 행)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개별 부처 소속으로 대외 위상도 낮고, 권한도 부족하여 여러 부처*를 총괄하는 정책 수립·조정 기능 미흡
 - * 특허청(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문체부(저작권), 농림부(식물신품종) 등
 - (개 선) 국가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및 정책 총괄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IP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
 - * (미국)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 IP 정책 총괄('08년~)
 - (일본)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 추진('03년~)
- 지역 거버넌스 :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IP 행정 체계 구축
 - 특사경 확대에 따른 IP 침해 수사, 지자체·지역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IP 지원, 지역 IP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지역 사무소 마련
 - 중장기적으로 지역 특허청 신설 등 지역 거버넌스 강화 검토·추진
- 지식재산 침해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제고
 -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을 가처분 사건, 부정 경쟁 행위·영업비밀 침해, 형사소송까지 확대 추진
 - *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 본안소송에 대한 관할만 특허법원으로 집중('16.1.1~)
 - * (현황) [1심] 지법(18)+지원(40) → [2심] 고법(6)+지법항소부(18) → [3심] 대법원
 - (개선) [1심] 고법소재지 지법(5) → [2심] 특허법원 → [3심] 대법원
 - 지식재산 소송에서의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 대리인의 기술 및 IP 법령 관련 전문성 제고
-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 정책 직무 훈련 과정 운영
 - 지식재산 기반 산업 혁신, 범부처 IP 협업 사업 발굴, 지역 IP 보호 등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 및 사법기관 대상 IP 교육과정 신설
 - * (신규자) 지식재산 기본, 지식재산과 경제·무역 등 1주일 과정
 - (관리자) 5인 1조로 부처 협력형 신규 정책 개발하는 직무훈련(1년 과정)

전략 3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기본 방향

- ◆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확대를 위해 민관 공동의 거래 플랫폼 구축 및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등 추진
- ◆ 혁신 기업이 우수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여 비즈니스에 성공하도록 지식재산 금융 시스템을 선진화
- ◆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가격 정상화, 신규시장 창출 및 공공수요 확대 등 추진

정책 목표

구분	As-is	To-be(~2023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	4,500억원	2.9조원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규모	1.7조원	3조원
특허출원 대리인 비용(공공기관)	74만원/건	138만원/건 (민간기업 수준)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률	34.9%	50%
대학·공공연 기술료 수입	1,700억원	2,700억원

혁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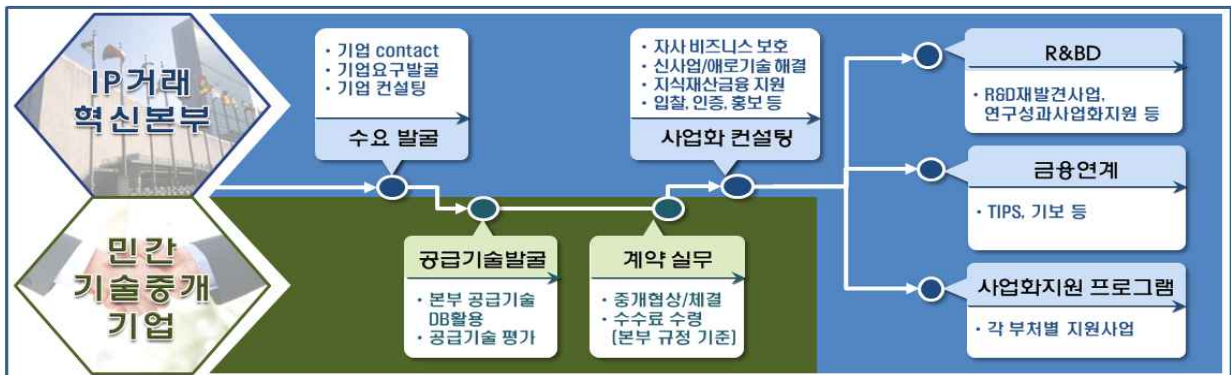
- 7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촉진
- 8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 9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7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촉진

◇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 특허 기술 마케팅,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활성화

□ 민관 합동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운영

- 공신력을 바탕으로 민간의 지식재산 거래를 촉진하는 「지식재산 거래 혁신본부(발명진흥회 소속)」 설립·운영('20~)
 - 혁신본부가 역량이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하여 공공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거래수요 발굴·제공 등 거래 전 과정을 지원
 - * 독일 슈타인바이스 방식('71년 주정부가 기술거래를 위해 설립)으로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하여 슈타인바이스 브랜드 사용 허가 및 거래수요 제공



□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기술수요 발굴거점으로 활용하여 수요 기업-특허거래전문가-TLO*를 연계하는 지역별 IP거래플랫폼 구축
 -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
- 특허 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수요·공급자 네트워크 (IP-PLUG)* 활성화 및 온라인 거래 사이트(IP-Market) DB 확충**
 - * 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심으로 구축(10개 신기술분야)
 - ** 산업부 등 국가기관 특허(3,200여건), 지자체 소유 특허(4,200여건) 등을 추가 탑재

□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

- 거래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 특허 관리전문회사, 투자자 등의 지식재산 거래·투자 촉진

< IP 거래시장 주요 정보 >

정보의 내용	정보의 의미
양도·전용실시 예정특허	민간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가능성
특허갭펀드 투자대상 특허	대학·공공연구의 특허기술 기업이전 가능성
발명자가 승계한 특허	발명자가 판단하는 특허의 잠재가치

□ 국제 특허기술 마케팅을 통해 국내 우수 IP의 해외라이선스 확대

-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동포 기업인에게 공공 IP 및 관련 제품 소개
- 해외기업의 특허거래수요 발굴, 우리 공공 IP 홍보 등을 위하여 KOTRA와 공동으로 해외기술이전 로드쇼 개최
- 신남방 국가 대상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 10개국이 참가하는 한·아세안 IP 페어 개최

< 국제 특허마케팅 주요 행사 >

구 분	참가대상	일 정
세계한상대회	해외동포 기업인	'19.11월, 여수
해외기술이전 로드쇼	중국, 일본 현지기업	(중국) 베이징, 광저우, 위해 (일본) 도쿄 등
한·아세안 IP페어	아세안 10개국 기업 등	'19.11월, 서울

□ 특허기술 글로벌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 (1단계) TLO(기술이전전담조직) 핵심인력*의 특허기술마케팅 해외교육 행사** 참가를 지원하여 글로벌 특허기술마케팅 전문가로 육성

* 참가요건 : ①전문자격(변리사, 변호사, 박사), ②장기근속(최소 3년), ③영어 능통

** 미국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 전문교육과정 : 전문주제(마케팅, 가치평가, 창업지원, 협상 등) 1일 강의 + 전문가 수준별(레벨1~4) 세미나 3일 과정

- (2단계) 1단계에서 육성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내 전문교육 실시

□ 대학·공공연의 특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및 규제 완화

- 특허 포트폴리오 지원사업을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전환하여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재원 확충

* (정부) 초기자금 지원, (대학·공공연)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상용화 검증)하여 기술이전하고, 기술료 일부를 회수하여 재투자

- 공공 특허기술의 양도·전용실시 절차 간소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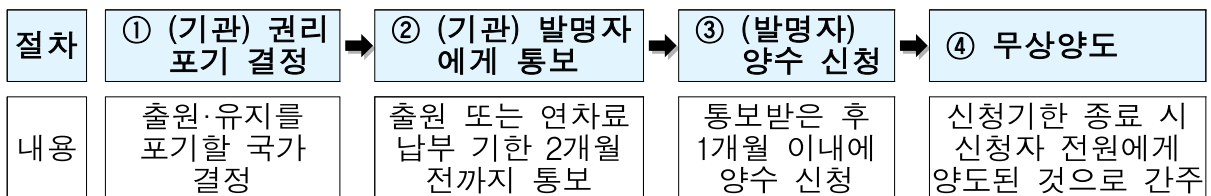
구분	현행	개선
공시내용	이전 희망 기술	양도·전용실시 예정기업 및 대상기술
공시기간	12개월	1개월

- 발명자 승계를 통한 유망특허 사장 방지 (이종호法)

- (현 황) 현행 규정*상 연구기관이 권리를 포기할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구속력이 없어 양도가 저조

* (공동관리규정 제20조제5항) ① 임의규정이므로 연구자에 대한 양도가 저조, ② 연구책임자에게만 양도 가능, ③ 해외특허출원 포기 시 양도 가능여부 불명확

- (개 선) 대학·공공연이 직무발명을 국내외 출원·유지하기 힘든 경우, 발명자에게 해당 권리를 귀속시켜 출원·유지 계속 진행



- 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 확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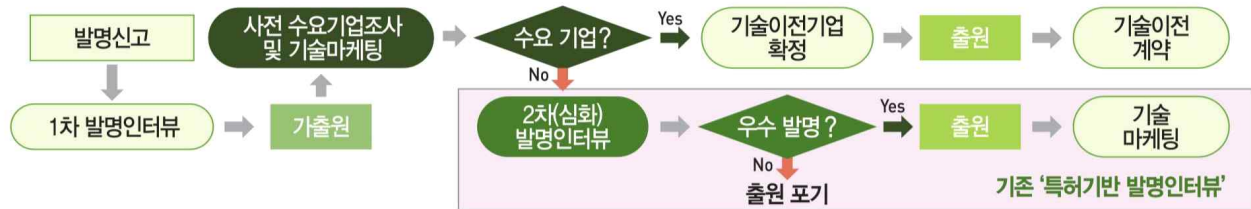
* 경상기술료 징수에 도움이 되는 계약조건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보급, 경상기술료를 포함하는 장기실적 기준으로 정부 R&D 선정가점 변경 등

- 정부 R&D 관련 법령과 지식재산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 (정합성 부족 사례) 특허법·발명진흥법은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권리를 소유하나, 공동관리규정은 연구기관이 소유한다고 기술

□ 대학·공공연의 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출원 전 발명심의 및 평가를 통해 유망 기술을 선별하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지원(연간 30개 기관 지원)



- 정부 R&D 과제평가 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

*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선점을 위해 특허출원건수는 유지하되, 장기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등록건수, 해외특허건수 등은 단기실적평가에서 제외

- 기술료 분배전 특허비용 선공제 도입

- 특허비용 등 직접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기술이전 수입을 분배할 수 있도록 기술료 분배규정(공동관리규정 등) 개정 추진

현 행	개 선
기술료 수입을 규정에 따라 분배	기술료 수입에서 특허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순기술료)을 규정에 따라 분배

- 특허비용 사전 약정제 도입 추진

- 대학·공공연이 정부 R&D 사업 예산 사업의 간접비에서 특허비용 사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약정하면, 간접비 상한에 약정액 반영

* 간접비 중 다른 항목 감액 없이 특허비용 증액이 가능하므로 대학·공공연이 자발적으로 특허비용 예산을 늘리도록 유도 가능

현 행		개 선 (특허비용 사전약정제)	
간접비 집행	간접비 상한 결정	간접비 집행	간접비 상한 결정
	최근 2년간 집행실적 반영		향후 2년간 집행약정(특허비용) + 최근 2년간 집행실적(기타) 반영

8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 ◇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확산하기 위해 IP 가치평가 확산, 금융리스크 완화 장치 도입 등 추진
- ◇ 지식재산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벤처 자금조달 지원

□ 민간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구축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 대상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금융 확대 기반 마련

< IP가치평가 지원계획(안)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IP가치평가 지원건수(건)	741	1,090	1,600	2,370	2,960
IP금융 연계액(억원)	4,500	7,000	10,000	15,000	20,000

- (민간 평가 기관 확대) 민간금융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을 확대하여 민간 자체의 IP금융 동력 확보 및 시장경쟁을 통한 품질향상 유도

< 금융권 중심 IP 가치평가기관 확대 >

	현행	개선
공공	산은, 기보, 신보	기은 등 추가
민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전체 시중은행, TCB 등 추가

- (가치평가 다변화) 금융권 수요에 맞는 신속·저렴한 평가를 위해 약식형 가치평가 및 모듈형 가치평가 도입

< IP 가치평가모델 개편(안) >

현행(정형화)		개선(다변화)	
유형	-	약식형 (200~300만원) 도입	
	보급형 (500만원)	보급형 (500만원)	모듈형 도입 : 금융권 선택에 따라 일부 항목만 평가 (예: 권리성 또는 기술성+권리성 등)
	일반형 (650만원)	-	
	심층용 (1,500만원)	심층용 (1,500만원)	

□ **시중은행의 지식재산 담보 대출 확대로 IP 금융 저변 확대**

-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하고, 저금리 등 대출조건을 우대하는 다양한 IP 대출상품 출시 지원

* ('18) 산업·기업·국민 → ('19) 우리·신한·하나 등 추가 → (~'23) 전 시중 은행

- 금융위원회의 시중은행 평가 항목에 'IP 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반영하여 민간 시중은행들의 IP 금융 참여 유도

* ('18) IP금융 실적을 기술금융 실적에 합산 → ('19) IP금융 실적을 별도 평가

□ **금융 리스크 완화 장치 도입을 통한 지식재산 담보 활성화**

- 은행의 회수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구(정부·은행 공동출연) 신설

< IP 회수지원기구 개념도(안) >



- 무형자산의 담보활용도를 높이도록 금융위와 협력하여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IP 담보·가치평가 인프라 혁신

* 부동산을 제외하고 채권, 지식재산권, 기타 동산 등 기업자산을 일체로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 **지식재산 투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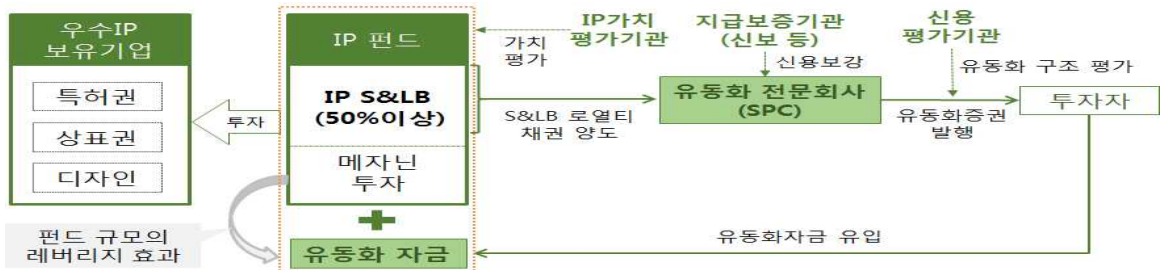
- 모태펀드 신규출자 정부예산의 지속적 확보·출자('19년 100억원) 및 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와 공동 IP 투자펀드* 신규 조성

* 모태·성장사다리펀드의 공동출자로 '19년 1,25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IP투자 추진('22년까지 4년간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 모태조합을 통한 IP 유동화증권 투자펀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자금의 IP 금융 생태계 유입 촉진

* Sales & License Back 투자펀드 조성(200억원) 및 유동화증권 발행(30억원, '19~'21)

< IP유동화증권 투자 구조 >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가치평가 지원대상을 '국내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 특허' 및 '해외 특허'로 확대하여 수출기업과 창업기업의 IP 금융 접근성 개선
- 벤처캐피탈 펀드의 IP 직접소유를 허용하고, 프로젝트 투자대상을 해외특허까지 확대하는 등 IP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

< IP투자 저해규정 개선 >

	현행	개선
VC의 특허 소유	불가	허용
평가지원 대상	등록 국내특허	출원/등록 국내·외 특허
IP프로젝트 투자	국내 특허	국내·외 특허

□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IP금융협의회) IP금융 현안 논의·개선안 도출 등을 위해 IP금융 실무자 중심으로 협업·소통 네트워크 구축('19~)

* 정례적 소통 창구로 활용(분기 개최 원칙)

- (IP금융포럼) 금융권·산업계·학계·관련 부처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IP금융 발전방향 모색 및 정책제언의 場 제공('19~)

< IP금융협의회 구성 >



9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 지식재산 서비스 가격 정상화 및 업무 영역 다변화, 공공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 ◇ 신규 지식재산 서비스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공 IP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의 경쟁력 확보

□ 지식재산 품질 제고를 위한 대리인 비용 적정화

- (현 황) 낮은 대리인 비용으로 인한 부실한 특허명세서 양산으로 공공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고품질 특허 창출로 연계하기가 곤란
 -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18, 변리사회)
- (개 선) 「국가기관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 확산,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해 지식재산 대리인 비용 현실화를 유도
 - * 국가기관 적정 대리인비용 권고(안) 마련('18.12.) 및 전 부처 시행('19상)
 - ** 적정 대리인비용 지불 캠페인, 경제단체-변리사회 간 협약식 등

□ 변리사의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역량 제고를 통한 업무 다변화

- 변리사를 기술가치평가·거래, IP금융, IP경영 컨설팅 등의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식재산 컨설턴트로 육성
 - 변리사회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지재권 이외에 신지식재산권, 금융, 경영, 라이선싱 등에 대한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

< 변리사 업무 역량 강화 >

	현 행	개 선
변리사 업무 대상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대리, 감정 및 기타 사무	산업재산권 대리, 감정 및 기타 사무 + 신지식재산권, 기술평가·거래, IP금융, IP경영 컨설팅 등

□ 정부 R&D 및 공공건설 분야 특허 감리 제도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R&D 사업 및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 IP 전문가가 사업과 특허 간의 연관성 등을 검증하는 체계 구축

* 특허 감리 계획 수립·부처 협의('19) → 시범 실시('20) → 확산('22~)

< 정부 R&D 및 공공건설 분야 특허관리 개선(안) >

	현행	개선
정부R&D	과제실적 부실제출 사례 빈발	IP 전문가가 R&D 성과와 특허출원 내용과의 연관성, 특허 출원·등록·이전 절차의 적정성 등 검증
공공건설	특정공법 건설 수주 시, 특허기술 등 발주공법대로 설계·시공 했는지 검증 미흡	특허기술 적용 발주공법과 실제 설계·시공 공법 간 연관성 심의 체계 구축

- 관급 공사 입찰 진행시 특허 보유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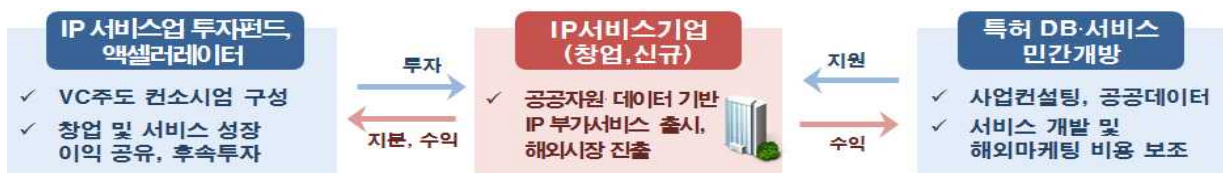
* (예시) 기업 보유 특허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가점 차별화 등

□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신사업 창출

- IP 서비스 기업이 개방된 IP 데이터·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BM 컨설팅 및 서비스개발 지원

* SMART3(특허분석평가시스템), KIPRIS^{plus} 가공DB 등

- IP 서비스업 투자펀드 또는 액셀러레이터가 후속 투자



- 정부에서 구축한 SMART3 평가모델*을 IP 서비스 업체가 활용하여 사업화·해외 진출하도록 지원

* 한국, 미국, 유럽의 특허정보를 추출하여 질적 평가(9등급)·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10.4~'18.12까지 81만건 사용('11년 3만건 → '18년 15만건)

□ 공공 지식재산 데이터의 민간 개방 확대로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 KIPRIS^{Plus}(특허정보활용서비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데이터 베이스 민간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 IP 정보 상품 수(누계) : ('18년) 94종 → ('19년) 99종 → ('22년) 115종 목표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에 축적된 노하우*를 민간 IP 서비스 업체에 제공

* 검색 키워드, 기술분류, 인용문헌, 신규성/진보성 관련도 등

□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의 전문화·대형화 촉진

- (전문회사 지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20년~) 추진

- (현 황) 발명진흥법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요건에 대한 고시 제정이 유예되어 비활성화

- (개 선) 전담인력 보유 및 자격*·경력, 보안체계 구비 등을 전문회사 요건으로 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

* (산재권 평가거래·금융업) 기술거래사, 전문엔젤 투자자 자격, 변리사, 회계사 자격 등

- (전문회사 지원) 전문회사가 M&A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에 대한 전문투자 펀드 조성('20),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IP 서비스 해외진출 협의체(특허청·민간기업·KOTRA)를 운영하여 해외진출 정보 교류 및 시장개척 활동 협력

- 해외 IP 서비스 전시회 참여시 홍보 부스 설치, 통역 지원 등 해외 현지 마케팅 지원

- 해외파견 특허관·주재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국제기구의 IP 서비스 민간조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국내기업에게 전파

전략 4

지식재산 통상 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기본 방향

- ◆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를 원활하게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통상 전략 추진
- ① 국내 특허를 해외국가에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에 유리한 IP 통상 질서 구축
- ② IP 시스템이 미비한 신흥국 등에 한국형 IP 시스템(심사, 제도 등)을 확산하여 우리기업의 IP 확보·보호에 최상의 환경 제공
- ③ 수출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해외 IP를 확보하도록 정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IP 침해발생시에도 적극 지원

정책 목표

구 분	As-is	To-be(~2023년)
한국심사결과 활용·인정 국가/건수	29개/1,500건	50개/3,000건
IP행정서비스 수출액	1.3천만불(~'18, 누적)	3.7천만불(~'23, 누적)
연간 해외특허 출원건수	7만건	11만건
지재권 무역수지	△19.9억\$	흑자 전환

혁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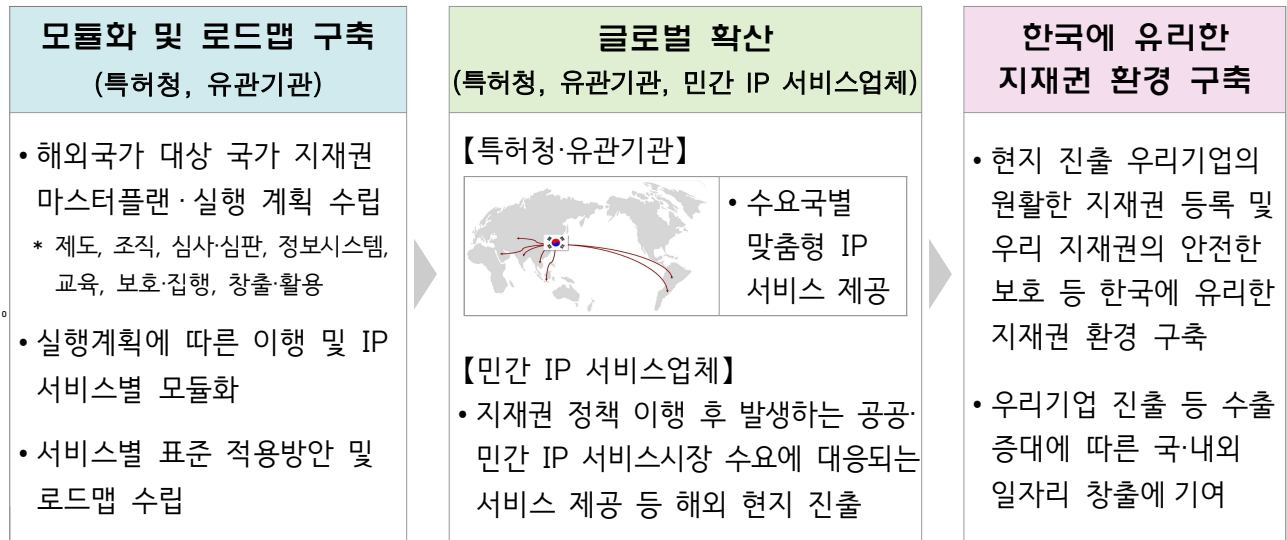
- ⑩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 ⑪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⑫ K-브랜드 침해방지 및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확대

10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해외 전파하고, 新 지식재산 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하여 한국 친화적인(Korea-Friendly) 지식재산 여건 구축

□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의 전략적 확산

<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의 글로벌 확산 모델(안) >



○ 효율적인 해외 수출·보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P 행정 서비스를 모듈화*하여 분야별 표준 적용방안 및 로드맵 수립

* IP 전략수립, 조직설립, 법·제도 검토, 행정(심사) 절차 개선, 심사대행, 지재권 교육, 정보시스템 개발, 인식제고, 지재권 창출·보호·활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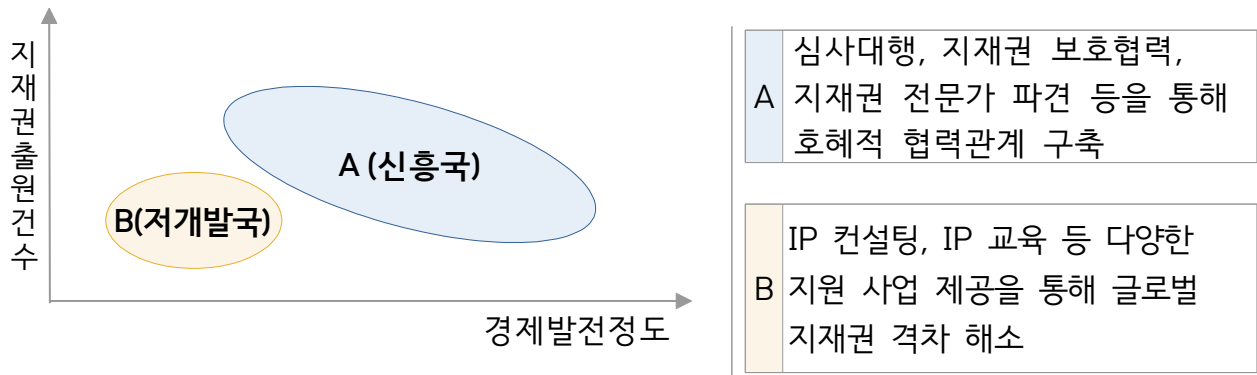
○ 신흥국·저개발국 중심으로 전략적 확산

- (신흥국) IP 컨설팅·교육 등 지원 사업을 통한 우호적 양자 관계 조성 → 심사대행, 정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 협력 고도화

* (사우디 사례) 지재권 전문가 파견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등 유상사업 추진('19)

- (저개발국) IP 교육·적정기술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여 우리기업에 유리한 현지 IP 환경 조성

* ASEAN 지역에 지재권 보호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의 특허권을 현지에서 자동 인정하는 등의 협약 체결 추진



- 행정서비스 수출·보급에 따른 현지 특허청과의 협력강화 및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해외 기관에 한국 지재권 전문가 파견 확대
 - * ('20-'23) UAE(5명) ('19-'22) 사우디(15명) ('22-'24) ASEAN(2명)
- 한국서비스 수출·보급 국가에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수출 컨설팅 등 지원

□ 양자 협력 확대를 통한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

- (신흥국·저개발국) 각 국의 지식재산 제도 및 보호 환경을 감안하여 맞춤형 IP 협력 활동 전개

대상 국가지역		협력 분야	추진 시기
심사처리기간이 긴 국가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특허심사협력, 심사관 교류 등	'19~'20
K브랜드 침해사례가 많이 보고되는 국가	중국, ASEAN 및 중동 국가	IP 보호(보호협의회 발족, IP 집행 교육·연수, 청장회담 의제화 등)	'19~'21
IP 제도 도입 초기 국가	저개발국	IP 제도 설계 컨설팅을 통해 한국형 IP 시스템 전파	'19~'20

- (선진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 특허청과의 심사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지재권 확보의 예측 가능성 제고

* 공동심사(CSP), 미공개단계 심사협력 등

** 전문가 교류·파견 확대: ('18) 4명(美·中·EUIPO) → ('20) 7명(美·中·EPO·EUIPO)

□ 국제 협의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IP 리더십 제고

- IP5, ID5, TM5*, 한·중·일 등 선진 지재산 협의체 內 국제 IP 규범 형성 주도 및 새로운 협력단계 진입을 위한 혁신의제** 발굴·추진

* IP5, ID5, TM5 : 각각 특허, 디자인, 상표 분야의 선진 5개국 협의체를 지칭

** 한·중·일 부정경쟁방지 협력('19), IP 보호 세미나 개최('20) 등

- 對 WIPO 협력 체계 공고화를 통해 WIPO 지역사무소 국내 유치 ('19.9), WIPO 內 고위직 직위 진출 등 추진

□ 지식재산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 체계적인 국제 지재산 협력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제협력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국제 지재산통상 협의회」 구성

- IP 전문가 교류, IP 서비스업 해외 진출 지원 등 해외 국가와의 IP 협력 활동 및 IP 행정서비스 해외 확산 활동 지원

- 효율적인 IP 행정서비스의 해외확산 계획 수립을 위해 대상 국가별 지재산 현황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해외 지재산·통상 DB 구축

-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특허관 직위 확대

* ('21) ASEAN대표부 ('22~) 中(상해), UAE, 브라질



11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해외 지식재산 확보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 육성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특허 확보 지원

- 우수 해외특허 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와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특허 창출·보호에 투자

* IP출원지원 펀드(억원) : ('19) 125 → ('23) 200

** 투자금 일부를 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대응에 활용, ('19) 500억원 → ('23) 5,000억원

- 지식재산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는 특허공제 사업*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선점·분쟁 예방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도 추진

* 가입기업 수(개) : ('19) 1,040 → ('23) 16,120

* 해외출원 비용, 분쟁 비용 등을 대여 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

-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활용하여 기업·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를 발굴하고 전략적 해외출원 및 수익화 지원

□ 유망 중소기업 및 제품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IP 종합서비스 지원

- 선행기술 조사부터 등록 단계까지 IP 창출 및 권리화의 쏠과정 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수(개): ('19) 570 → ('23) 750

- 글로벌 기술혁신 IP-R&D*로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 제품중심의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 지원(개): ('19) 43 → ('23) 100

12 K-브랜드 침해방지 및 지재산권 분쟁대응 지원확대

◇ **한류에 편승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외교적·법률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해외 지재산권 분쟁에 대한 현지 지원 체계 확대**

□ 한류 부당편승 대응 등 K-브랜드 보호 강화

- 한류편승 외국기업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현지 정부 등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한 K-브랜드 보호

* 한국화장품협회, 외교부, 산업부, 무역협회 등으로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운영

- 국가별 실태조사, 법률검토, 현지 단속요청 및 모니터링 등 대응 확대

<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현지 대응 절차 >



- 해외 상표선점(상표브로커) 피해에 우리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표출원·등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컨설팅 등 지원
- 중국 및 아세안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 제품·K-브랜드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적시 대응

* (중국) 알리바바·징둥, (아세안) LAZADA(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확대

- 수출기업이 해외 지재산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19) 8개국 15개소 → ('23) 16개국 23개소)

- 해외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지재산 분쟁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 상표 등 개별 권리가 아닌 '권리통합형* 분쟁 컨설팅' 확대

* 국제 지재산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억원): ('19) 98 → ('23) 200

-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공동대응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산업분야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지원

* 디지털 영상분야(H.256 Codec 관련), 음향기술분야(Dolby 관련) 등

VI. Action Plan

분 야	추진 일정				
	2019	2020	2021	2022	2023
①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 전략 수립	4개 분야 (디스플레이 등)	38개 분야(~'23, 누적)			
▶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확산		R&D 법령에 규정화			
▶ IP-R&D 및 R&D 부처 공동사업	연간 80개 과제('19) → 연간 160개 과제('23)				
▶ 기업 주문형 IP-R&D	연간 20개 과제('19) → 연간 50개 과제('23)				
▶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	연간 25개 과제('19) → 연간 50개 과제('23)				
▶ IP-R&D 인프라 구축	IP-R&D 가이드라인 보급, 정부 R&D 등에 IP-R&D 제도화				
▶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2개 분야	10개 분야('20~'23, 누적)			
▶ 표준특허 전략 지원	연간 33개 과제('19) → 연간 50개 과제('23)				
▶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 추진	추진 계획 수립	스타트업 선정 및 지원(매년 10개)			
▶ IP 기반 스타트업·벤처 투자 확대	1,800억원	2,000억원	2,200억원	2,500억원	2,700억원
▶ 특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 스타트업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및 시행			
▶ 스타트업 CEO 대상 IP 전략 프로그램 운영	'19년 하반기부터 운영				
②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 특허심사 투입시간	12.7시간('19) → 20.0시간('23)				
▶ 기술설명회 등 대면 심사 활성화	연간 2,500건('19) → 연간 3,500건('23)				
▶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심사 고도화	심사 시스템 효율화 (유용 정보 사전제공, 명세서 스마트 통합관리)			AI 활용 검색시스템 구축	
▶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 예산 확대	연간 334억원('19) → 연간 500억원('23)				
▶ 특허 침해자 이익전액을 손해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국회 통과				
▶ 상표·디자인 징벌배상 제도 도입 추진	법안 마련 및 발의	국회통과			

분 야	추진 일정				
	2019	2020	2021	2022	2023
▶ 지식재산 중재제도	법안 마련 및 발의	국회통과			
▶ 첨단신기술로 파생된 상표·디자인 보호	법안 마련 및 발의	국회통과			
▶ 아이디어 탈취행위 시정명령·불이행죄 도입	국회 통과				
▶ 특사경 확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출범('19.3) 및 운영				
▶ 아이디어 소발명보호 제도 개선	포럼운영	법안마련 및 발의	국회통과		
▶ 공무원 대상 IP 정책 직무 훈련 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③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 민관 합동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	플랫폼 운영		
▶ 글로벌 기술마케팅 전문 인력 육성		핵심인력 선발 및 해외교육참가 지원		국내교육 운영	
▶ 특허갭펀드 조성	특허갭펀드 도입	특허갭펀드 확대 운영			
▶ 연구기관 포기특허의 발명자 승계	법안 발의	제도 운영			
▶ 경상기술료 방식 확대	공동관리 규정 개정	개별부처 규정에 반영			
▶ 특허비용 선공제	공동관리 규정 개정	개별부처 규정에 반영			
▶ IP 회수지원기구	법안 발의	회수지원기구 신설	회수지원기구 운영		
▶ 적정 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배포	대리인비용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 특허감리제도 도입	계획 수립	시범 도입	확산		
④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글로벌 확산	서비스 모듈화/분야별 표준적용 방안 수립		중동, 아세안,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확산		
▶ IP 보호/부정경쟁방지 협력	한중일 포럼	IP 보호 세미나 개최			
▶ 특허관 직위 확대	-	ASEAN 대표부	상해, UAE, 브라질		